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37호 2020. 8. 19.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193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0-197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5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906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 공람 · 공고·7
- 정선군 공고 제2020-95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0-96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3

○ 정선군 공고 제2020-97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5
○ 정선군 공고 제2020-97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5
○ 정선군 공고 제2020-971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3
○ 정선군 공고 제2020-971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입법예고.....	42
○ 정선군 공고 제2020-982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4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193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조동7.8리 새뜰마을(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577,000천원
 - 국고 (1,774,000), 지방비(661,000), 자부담(142,000)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7.8리 안경다리마을 일원
 - 기반시설정비 : 배수로정비(216m), 안전확보(보안등 23개소, 가로등 13개소, 소화전 4개소), 문화복지공간 조성(복지회관 225㎡), 조동7리 경로당 지붕개선(104㎡), 커뮤니티센터 조성(근현대역사마을 일부 리모델링 99㎡)
 - 주택정비 : 빈집정비 18호, 슬레이트 지붕개량 24호, 집수리 56호.
 - 마을환경개선 : 안길정비(안길포장 99m, 난간조성 1개소, 분리수거장 3개소), 샘터 정비(2개소), 재래식 공동화장실 정비(7개소), 노후담장 정비(65m)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휴먼케어 1식, 주민역량강화 1식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 2019 ~ 2021(3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 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고시 제2020-197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0-146호(2020. 6. 26)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18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 2) 명 칭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시행	
광장	경관광장	781	■ 경관광장 781㎡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경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366-59	대	387	42		정선군	-	-	-
2	사북읍 사북리	366-168	도	1,782	475		정선군	-	-	-
3	사북읍 사북리	452	천	251,718	228		국(건설부)	-	-	-
4	사북읍 사북리	452-5	대	162	36		정선군	-	-	-
계		4필지		254,049	781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906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로 최초 결정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변경)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m ²)	금회 시행	
공원	임계3 어린이공원	2,441	■ 임계3 어린이공원 변경 조성 A=2,441.0m ² - 편익시설 18.0m ² - 유희시설 322.0m ² - 운동시설 150.0m ² - 기반시설 893.0m ² - 녹지 및 기타 1,058.0m ²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7. 31~2020. 8. 14.)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46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280-30	구거	124.0	124.0	-	농림축산 식품부	-	-	-
2	임계면 송계리	497-2	도로	5.0	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임계면 송계리	640-50	도로	90.0	90.0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임계면 송계리	679	답	446.0	122.2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임계면 송계리	683-2	공원	13.0	13.0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임계면 송계리	686-1	답	455.0	300.0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임계면 송계리	689-1	공원	285.0	2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임계면 송계리	691-1	공원	685.0	6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임계면 송계리	692-2	공원	772.0	770.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임계면 송계리	692-3	답	174.0	1.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임계면 송계리	696-3	공원	44.0	44.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1필지		3,093.0	2,441.0					

정선군 공고 제2020-95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4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18-2번지 일원
3. 규 모 : 도로 신설 2개소, 변경 1개소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여량면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0. 8. 14. ~ 2020. 8. 31.)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여량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96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정 선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성 명 (업체명)	주 소	통지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하○주	강원도 정선군 남면 지장천로 30-5, 003호	20.08.10.	강원도 정선군 남면 지장천로 30-5 일대	※ 참조	100,000원	폐문부재 등

※ 위반내용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3. 공고기간 : 2020. 08. 10. ~ 2020. 08. 25. (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향후 과태료 부과를 지속적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최고 60개월까지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 통지하오니 2020년 08월 25일까지 정선군청 환경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033-560-2359, fax 033-560-2589)

정선군 공고 제2020-97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 수당” 신설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 사문화된 규정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 수당”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
 - “참전공로수당” 을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 수당” 으로 변경 (안 제2조 제1항, 제3조)
- 민원 서식 신설
 -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 수당 신청자의 주소 및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안 제2조 제3항)
 -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 수당 신청자가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수령포기 신청서 제출(안 제2조 제4항)
 - 전출로 인해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할 경우 자격회복 신청서 제출 (안 제2조 제5항)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받음(별지 제1호 서식)
- 조례개정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개정
 -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 을 “신청한 날” 로 함(안 제6조 제3항)
 - “제3조 제1항” 을 “조례 제3조” 로 함(안 제3조)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8. 13. ~ 2020. 9. 1.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복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14),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규칙 제 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참전공로수당 신청”을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를 “조례제3조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로, “참전공로수당을”을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신청시기 및 서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u>참전공로수당 신청</u> 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신청시기 및 서식) ① ----- <u>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신청</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조례 제6호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u>
<신설>	④ <u>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u>
<신설>	⑤ <u>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u>
제3조(지급시기) <u>제3조제1항에</u>	제3조(지급시기) <u>조례제3조에 따</u>

따른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
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을 지급한다.

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
----- 참전
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
-----.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소	강원도 정선군 읍(면) (우편번호 :)			
	연락처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배우자수당 신청자)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 수당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소	강원도 . . . 시·군 (전화번호 . . .)			
변동사항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수당 (수령포기·자격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강원도 정선군 (전화번호)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공로·배우자수당의 (수령포기·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자격회복신청시)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배우자수당 신청 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회복신청시)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법령 발췌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정선군 공고 제2020-970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본인 사망 후 유족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하여 배우자 수당 신설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유족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하여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생계유지 수당을 지급하며 (안 제4조 제3호)
 - 수당의 지급은 2021. 1월부터 개시함(부칙)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8. 13. ~ 2020. 9. 1.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복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14),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 매월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참전공로수당”을 각각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으로, 같은 항 중 “지급연령에 도달하는”을 “신청한”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공로수당”을 “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의 “배우자수당”은 2021년 1월을 지급 개시일로 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 매월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u>
3. 4. (생략)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월 중 <u>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u> 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 <u>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참전</u>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참전</u>

공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공로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생 략)

제7조(지급의 중단) 군수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군·자치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목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

②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

③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 신청한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의 중단) -----
--- 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

-----.

군수는 지금의 재개여부를 결정 한다.	
-------------------------	--

관계법령 발췌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정선군 공고 제2020-971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 호국보훈수당 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 서식 신설
 - 호국보훈수당 신청자의 주소 및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안 제2조 제3항)
 - 호국보훈수당 신청자가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수령포기신청서 제출
(안 제2조 제4항)
 - 전출로 인해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할 경우 자격회복 신청서 제출
(안 제5조 제1항 단서 신설)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8. 13. ~ 2020. 9. 1.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복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14),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규칙 제 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군수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하여 거주목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남,여)	
	주소	강원도 . . . 시·군 (전화번호 . . .)			
변동사항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 . . 월 . . .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참전등록번호			
호국보훈수당 (수령포기·자격회복)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 강원도 정선군 (전화번호)	
예금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수령포기·자격회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자격회복신청시)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자격회복신청시)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주소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관계법령 발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971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업 지원을 위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선정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8. 13. ~ 2020. 9. 1.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복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14),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선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8조(복지지원 등)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 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의 설치를 허가·위탁 할 경 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 는 우선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선정 할 수 있다</u>

관계법령 발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982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재정지원 (안 제4조)
- 지원절차 등 (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 8. 18. ~ 9. 8. (22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64),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4.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5. 택시 브랜드홍보 광고 지원 사업
6. 군민안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8. 14.>

1. 시·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5. 19.>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 2020. 5. 19.>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